소화설비의 설치

2018. 03. 00

CONTENTS

- I 소화설비의 종류
- Ⅲ 소화설비 설치의 구분
- Ⅲ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
- IV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
- V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
- VI 물분무소화설비의 기준
- VII 포소화설비의 기준
- VⅢ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
- IX 분말소화설비의 기준
- X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기준

출제 포인트

- 이 섹션에서는 소화난이도등급과 소화설비의 적응성, 소요단 위 능력단위에 대한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다.
- 특히 소화설비의 적응성은 표 전체를 통째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한다.
-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한다.
- 소화설비의 기준에서도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니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도록 한다.

소화설비의 종류

• 소화기구



소화설비의 종류

- 옥내소화전설비(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)
- 스프링클러관련 설비
 - 스프링클러설비·간이 스프링클러설비 (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) 및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
- 물분무등소화설비
 - 물분무소화설비
 - 미분무소화설비
 - 포소화설비
 - 불활성가스소화설비 (이산화탄소소화설비, 질소 소화설비)
 -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
 -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
 - 분말소화설비
 - 강화액소화설비
- 옥외소화전설비

소화설비 설치의 구분

- 옥내소화전설비 및 이동식 물분무등 소화설비
 -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.
- 옥외소화전설비
 - 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능력범위로 하고 건축물의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에 대 하여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한다.
 - 옥외소화전설비를 옥외 공작물에 대한 소화설비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방수거리 등을 고려한 방사능력범위에 따라 설치한다.
-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한다.
 - 종형탱크에 설치 시 고정식 포방출구 방식으로 하고 보조포소화전 및 연결송액구를 함께 설치할 것

소화설비 설치의 구분

- 소화난이도 등급 1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·외 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시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탱크(인화점 21℃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한함)의 펌프설비,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옥내·외 소화전 설비,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한다.
 - 이 경우 당해 취급탱크의 펌프설비, 주입구 또는 토출구에 접속하는 배관의 내경이 200mm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펌프설 비, 주입구 또는 토출구에 대하여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 소화설비에 한한다.
- 포소화설비 중 포모니터노즐방식은 옥외의 공작물(펌프설비 등을 포함한다) 또는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방호대상물로 한다.

- 설치기준
 -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 설치 위치 :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.5m 이하
 -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 : 25m 이하
 - 수원의 수량 : 설치개수(5개 이상인 경우 5개)에 7.8m³를 곱한 양 이상
 - 방수압력: 350kPa 이상
 - 방수량 : 1분당 260L 이상
 - 비상전원 용량 : 45분 이상
 - 큐비클식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는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

-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장소
 - 불연재료로 제작한 곳
 - 점검이 편리한 곳
 -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
 -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
- 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
 - 색상: 적색
 - 위치 :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
 - 설치예외
 - ❖시동표시등 점멸에 의해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것이 가능한 경 우
 - ❖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 수 압개폐장치로 사용하는 경우

-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표시
 - 옥내소화전함 표면에 "소화전"이라고 표시
 - 적색표시등 :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의 벽면에 설치
 - ❖ 부착면과 15° 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진 곳에서 용이하 게 식별이 가능할 것
-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
 - 수원의 수위가 펌프(수평 회전식에 한함)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장치에 설치
 - 전용 물올림탱크설치
 - 탱크 용량 :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양
 -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

- 배관의 설치기준
 - 전용배관을 사용할 것
 - 주배관중 입상관은관의 직경이 50mm 이상인 것으로 할 것
 -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 를 설치할 것
 - 개폐밸브에는 그 개폐방향을, 체크밸브에는 그 흐름 방향을 표시할 것
 - 배관용 탄소강관(KS D 3507), 압력배관용 탄소강관(KS D 3562)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,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관을 사용할 것
 -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.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
 -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할 것
 -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
 - ❖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후드밸브를, 그 외의 경 우에는 개폐밸브

-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
 -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
 - ❖ 필요 낙차(수조의 하단으로부터 호스접속구까지의 수직 거리)

$$H = h_1 + h_2 + 35m$$

▶ H : 필요낙차(단위 m)

▶ h₁: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

▶ h₂ : 배관의 마찰손실수두

❖수위계, 배수관, 오버플로우용 배수관, 보급수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

-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
 -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
 - ❖ 압력수조의 압력

$$P = P_1 + P_2 + P_3 + 0.35MPa$$

▶ P : 필요한 압력(단위 : Mpa)

▶ P₁: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

▶ P₂ :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

▶ P₃ : 낙차의 환산수두압

- ❖ 압력수조의 수량 : 당해 압력수조 체적의 2/3이하
- ❖ 압력수조에 압력계, 수위계, 배수관, 보급수관, 통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

-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
 -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
 - ❖ 펌프의 토출량 :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 치개수(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 5개)에 260ℓ/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
 - ❖펌프의 전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

$$H = h_1 + h_2 + h_3 + 35m$$

▶ H : 펌프의 전앙정 (단위 m)

▶ h₁ :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(단위 m)

▶ h₂: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(단위 m)

➤ h₃: 낙차(단위 m)

- 축전지설비
 -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부터 0.1m 이상 이격할 것
 - 축전지설비를 동일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.6m(높이가 1.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) 이상 이격할 것
 -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
 -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 할 것
 -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당해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

- 설치기준
 - 수원의 수량 : 설치개수(4개 이상인 경우 4개)에 13.5m³를 곱한 양이 상
 - 방수압력 : 350kPa 이상
 - 방수량 : 분당 450L 이상
 -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 설치 위치 :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.5m 이하
 - 호스접속구까지의 거리 : 40m
 - 옥외소화전설비는 습식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
 - 비상전원 용량 : 45분 이상
 - 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능력범위로 하고 건축물의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
 - 옥외소화전설비를 옥외 공작물에 대한 소화설비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방수거리 등을 고려한 방사능력 범위에 따라 설치

- 옥외소화전함설치
 - 불연재료로 제작
 - 옥외소화전으로부터의 거리 : 5m 이하
 - 화재 발생시 쉽게 접근 가능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

- 설치기준
 -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명거리 : 1.7m
 - ❖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: 2.6m
 - 방사구역 : 150m² 이상
 - ❖ 바닥면적이 150m²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적
 - 수원의 수량
 - ❖ 개방형 : 설치 개수 x2.4m³ 이상
 - ❖ 폐쇄형 : 30개 (307fl 미만인 경우 해당 개수) x 2.4m³ 이상
 - 방사압력 : 100kPa
 - ❖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: 50kPa
 - 방수량 : 1분당 80L
 - ❖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: 56L
 - 비상전원 용량 : 45분 이상

- 스프링클러헤드 설치
 - 헤드의 반사판과 부착면과의 거리: 0.3m 이하
 - 반사판으로부터의 거리 : 하방 0.45m, 수평 0.3m ❖ 가연성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·하방 0.9m, 수명 0.4m
 - 개구부에 설치하는 경우 :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높이 0.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
 - 헤드의 축심이 부착면에 대해 직각이 되도록 설치
 - 부착장소의 평상시의 최고주위옹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표시온도 를 갖는 것을 설치할 것

부착장소의 최고주위온도(단위 : ℃)	표시온도(단위 : ℃)
28 미만	58 미만
28 이상 39 미만	58 이상 79 미만
39 이상 64 미만	79 이상 121 미만
64 이상 106 미만	121 이상 162 미만
106 이상	162 이상

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변의 길이가 1.2m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

- 제어밸브 설치(물분무설비도 동일)
 - 설치장소
 - ❖개방형: 방수구역마다
 - ❖폐쇄형 : 방화대상물의 층마다
 - 설치 위치 : 바닥면으로부터 0.8m 이상 1.5m 이하의 높이
 - ❖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수동식 개방밸브를 개방 조작하는 데 필요한 힘이 15kg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
- 자동경보장치설치
 - 설치장소
 - ❖ 발신부 : 각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
 - ❖ 수신부 : 수위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

• 스프링클러설비의 장단점

장점	단점
 화재의 초기 진압에 효율 사용 약제를 취득 용이 자동으로 화재 감지 및 소화 조작이 쉽고 안전 화재 진압 후 복구 용이 	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듦 시공 복잡 분말이나 가스계 소화설비보다 물로 인한 피해가 큼

물분무소화설비의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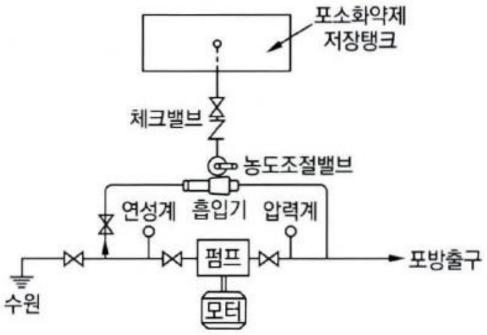
• 설치기준

- 방사구역: 150m² 이상(표면적이 150m² 미만인 경우 해당 면적)
- 수원의 수량 : 표면적 1m²당 1분당 20L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 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
- 방사압력: 350kPa 이상
- 물분무소화설비에 2 이상의 방사구역을 두는 경우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하는 방사구역이 상호 중복되도록 할 것
- 고압의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당해 전기설비와 분무헤드 및 배관 과 사이에 전기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보유할 것
-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각 층 또는 방사구역마다 제어밸브, 스트레이너 및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를 설치할 것
- 스트레이너 및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는 제어밸브의 하 류측 부근에 스트레이너,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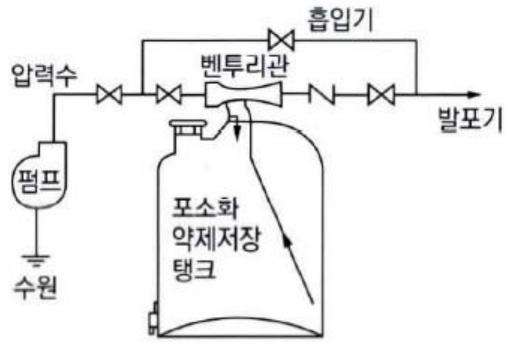
- 포헤드 설치
 -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9m²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고,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m²당의 방사량이 6.5L/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
 - 방사구역: 100m² 이상(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00m²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)
- 보조포소화전설치
 - 상호간의 거리 : 보행거리 75m 이하
 - 방사압력 : 0.35MPa 이상
 - 방사량 : 400L/min

- 포모니터노즐 설치
 - 방사량 : 1,900L/min 이상
 - 수평방사거리 : 30m 이상
 - 가압송수장치설치
 - ❖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낙차
 - $> H = h_1 + h_2 + h_3$
 - ➤ H: 필요한 낙차 (단위 m)
 - ▶ h₁: 고정식포빙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이동식포소화설비 노즐방사 압력 환산수두(단위 m)
 - ▶ h₂: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(단위 m)
 - ▶ h₃ 이동식포소회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(단위 m)
 - ❖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압력수조의 압력
 - $P = p_1 + p_2 + p_3 + p_4$
 - ▶ p : 필요한 압력(단위 Mpa)
 - ▶ P₁: 고정식포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이동식포소화설비 노즐방사압력(단위 MPa)
 - ▶ P₂: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(단위 Mpa)
 - ▶ P₃: 낙차의 환산수두압(단위 MPa)
 - ▶ P₄: 이동식모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(단위 Mpa)
 - 기동장치 : 자동식 또는 수동식의 기동장치를 설치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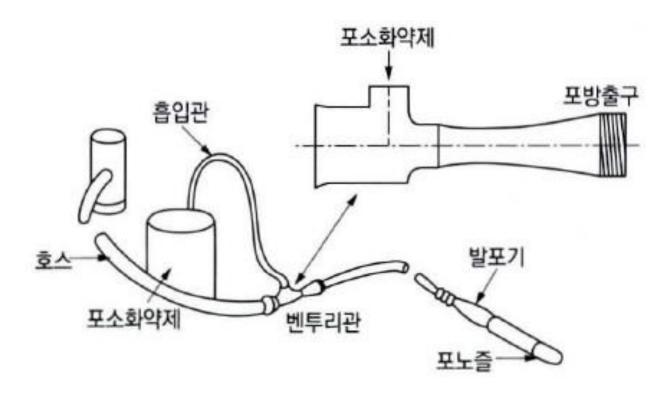
-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
 -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(Pump Proportioner Type)
 - ❖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, 농도 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 요양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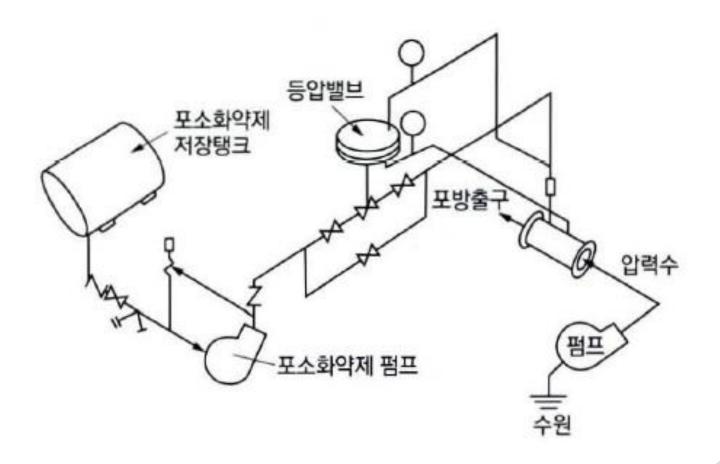
-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
 -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 (Pressure Proportioner Type)
 - ❖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과 펌프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· 혼합하 는 방식



-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
 -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(Line Proportioner Type)
 - ❖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에 의하여 포소 화약제를 흡입·혼합하는 방식



-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
 - 프레셔 사이드프로포셔너 방식 (Pressure Side Proportioner Type)
 - ❖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 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



-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
 - 포방출구의 구분
 - ❖ I 형
 - ▶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
 - √ 상부포주입법 : 고정포빙출구를 탱크옆판의 상부에 설치하여 액표면상에 포를 방출하는 방법
 - ▶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증기가 외부로 역 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

❖Ⅱ형

-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
 - ✓ 옥외저장탱크의 액상에 금속제의 플로팅, 팬 등의 덮개를 부착한 고정지붕구조의 것
- ▶ 방출된 포가 탱크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 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 물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·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

-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
 - 포방출구의 구분
 - ❖ 특형
 - ▶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
 - ▶ 부상지붕의 부상부분상에 높이 0.9m 이상의 금속제의 칸막이(방출된 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는 배수구를 설치한 것에 한함)를 탱크옆판의 내측로부터 1.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 는 포방출구

❖Ⅲ형

- ▶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포주입법을 이용
 - ✓ 저부포주입법 : 탱크의 액면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부터 포를 탱크 내에 주입하는 방법
- > 송포관으로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
 - ✓ 송포관: 발포기 또는 포발생기에 의하여 발생된 포를 보내는 배관을 말한다. 당해 배관으로 탱크내의 위험물이 억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기구를 갖는 것 에 한함

-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
 - 포방출구의 구분
 - ❖ IV형
 - ▶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포주입법을 이용
 - ▶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(포방출이 용이하도록 이탈되는 캡 포함)에 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되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호스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이 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

-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 방출구
 - 포방출구 설치
 - ❖ 포방출구는 다음 표에 의하여 탱크의 직경, 구조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른 수 이상의 개수를 탱크 옆판의 외주에 균등한 간 격으로 설치할 것
 - ❖※ 왼쪽란에 해당하는 직경의 탱크에는 I 형 또는 I 형의 포방출구를 8개설치하는 것 외에, 오른쪽란에 표시한 직경에 따른 포방출구의 수에서 8을 뺀 수의 II 형 또는 IV형의 포방출구를 폭 30m의 환상부분을 제외한 중심부의 액표면에 방출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할 것

	포방출구의 개수					
탱크의 구조 및 포방 출구 의 종류	고정지	붕구조	부상덮개 부착 고정 지붕구조	부상지붕 구조		
탱크직경	형 또 는 형	Ⅲ형 또 는 Ⅳ형	비형	특형		
13m 미만		1	2	2		
13m 이상 19m 미만	2		3	3		
19m 이상 24m 미만			4	4		
24m 이상 35m 미만		2	5	5		
35m 이상 42m 미만	3	3	6	6		
42m 이상 46m 미만	4	4	7	7		
46m 이상 53m 미만	6	6	8	8		
53m 이상 60m 미만	8	8	10	10		
60m 이상 67m 미만		10	/	10		
67m 이상 73m 미만		12] /	12		
73m 이상 79m 미만	*	14				
79m 이상 85m 미만		16		14		
85m 이상 90m 미만		18				
90m 이상 95m 미만		20		16		
95m 이상 99m 미만		22]/	16		
99m 이상	E-1	24	/	18		

-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
 - 포방출구의 종류
 - ❖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 133조

	* Head CCCdal CC all VC all 1997								
위험들	포방출구의 종류 물의 구분	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21°C 미만	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21℃ 이상 70℃ 미만	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70°C 이상		포방출구의 종류 를의 구분	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21℃ 미만	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21℃ 이상 70℃ 미만	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70℃ 이상
I 형	포수용액량 (L/m²)	120	80	60	Ш ф	포 수용 액량 (L/m²)	220	120	100
	방출률 (L/m²·min)	4	4	4		방출률 (L/m²·min)	4	4	4
耳형	포수용액량 (L/m²)	220	120	100	IV 형	포 수용 액량 (L/m²)	220	120	100
	방출률 (L/m²·min)	4	4	4		방출률 (L/m²·min)	4	4	4
특형	포 수용액 량 (L/m²)	240	160	120					0.
	방출률 (L/m²·min)	8	8	8					

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

-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기준
 -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
 - 온도가 40°C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
 -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
 -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(용기밸브에 설치 되어 있는 것 포함)를 설치 할 것
 -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,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
 - 충전비
 - ❖고압식 : 1.5 이상 1.9 이하
 - ❖ 저압식 : 1.1 이상 1.4 이하
 - 저압식저장용기 내의 설치사항(이산화탄소)
 - ❖액면계 및 압력계
 - ❖ 압력경보장치 : 2.3MPa 이상 1.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
 - ❖ 자동냉동기 : 용기내부의 온도를 영하 18~20℃를 유지
 - ❖파괴판 및 방출밸브

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

- 배관에 대한 기준
 - 전용으로 할 것
 - 동관의 배관은 고압식인 것은 16.5MPa 이상, 저압식인 것은 3.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
 - 관이음죄는 고압식인 것은 16.5MPa 이상, 저압식인 것은 3.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
 - 낙차(배관의 가장 낮은 위치로부터 가장 높은 위치까지의 수직거리) 는 50m 이하일 것
- 기동용가스용기 설치기준
 -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
 - 내용적 : 1L 이상
 - 이산화탄소의 양 : 0.6kg 이상
 - 충전비 : 1. 5 이상
 -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

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

- 비상전원용랑
 - 1시간 이상 작동할 것
- 이동식불활성가스소화설비 설치기준
 - 노즐 방사량 : 20°C에서 90kg/min 이상
 -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 : 호스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
 - 저장용기 : 호스를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
 - 적색등 설치 : 저장용기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 "이동식불활성가스소 화설비 "라고 표시
 - 화재 시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
 -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 : 15m 이하
 -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

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

- 분사헤드 설치기준
 - 방사압력
 - ❖ 이산화탄소
 - ▶ 고압식(소화약제가 상온으로 용기에 저장) : 2.1MPa 이상
 - ➤ 저압식(소화약제가 영하 18t 이하의 온도로 용기에 저장): 1.05MPa 이상
 - ❖ 질소(IG-100), 질소와 아르곤의 용량비가 50대 50인 혼합물(IG-55) 또는 질소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의 용량비가 52대 40대 8인 혼합물(IG-541)을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1.9MPa 이상일 것
 -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사시간
 - ❖ 전역방출방식: 60초 이내
 - ❖국소방출방식 : 30초 이내

분말소화설비의 기준

-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
 - 방사압력: 0.1MPa 이상
 - 방사시간 : 30초 이내
-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
 - 가압용 가스
 - ❖ 질소 : 소화약제 1kg당 온도 35℃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40L 이상
 - ❖ 이산화탄소 : 소화약제 1kg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이상
 - 축압용 가스
 - ❖ 질소 : 소화약제 1kg당 온도 35℃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10L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이상
 - ❖ 이산화탄소 : 소화약제 1kg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이상

분말소화설비의 기준

- 클리닝장치
 -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하기 위한 클리닝장치를 설치할 것
- 저장용기충전비

소화약제의 종별	충전비의 범위
제1종 분말	0.85 이상 1.45 이하
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	1.05 이상 1.75 이하
제4종 분말	1.50 이상 2.50 이하

• 이동식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사량

소화약제의 종류	소화약제의 양(단위 : kg)
제1종 분말	45 <50>
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	27 <30>
제4종 분말	18 <20>

■ 오른쪽란에 기재된 '<>' 속의 수치는 전체 소화약제의 양임

할로겐화소화설비의 기준

- 분사헤드
 - 방사압력
 - ❖ 하론2402 : 0.1MPa 이상
 - ❖ 하론1211 : 0.2MPa 이상
 - ❖ HFC-227ea : 0.3MPa 이상
 - ❖ 하론1301, HFC-125 : 0.9MPa 이상
 - 방사시간
 - ❖ 전역방출방식
 - ▶ 하론2402, 하론1211, 하론1301 : 30초 이내
 - ➤ HFC-23, HFC-125, HFC-227ea : 10초 이내
 - ❖국소방출방식 : 30초 이내
- 축압식 저장용기등의 질소가스 가압
 - 축압식 저장용기등은 온도 21°C에서 하론1211을 저장하는 것은 1.1MPa 또는 2.5MPa, 하론1301 또는 HFC-227ea를 저장하는 것은 2.5MPa 또는 4.2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가압할 것

할로겐화소화설비의 기준

- 저장용기의 충전비
 - 하론2402
 - ❖ 가압식 저장용기 : 0.51 이상, 0.67 이하
 - ❖ 축압식 저장용기 : 0.67 이상, 2.75 이하
 - 하론1211 : 0.7 이상, 1.4 이하
 - 하론1301 및 HFC-227ea : 0.9 이상, 1.6 이하
 - HFC-23 및 HFC-125 : 1.2 이상, 1.5 이하
- 소화약제의 앙(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)
 - 1.1 x 8.8kg(하론2402)
 - 표면적 × 소화약제의 계수 x 1.1 x 7. 6kg(하론1211)
 - 1.25 x 6.8kg(하론1301)

할로겐화소화설비의 기준

- 이동식할로겐화물 소화설비
 - 방사량 : 하나의 노즐마다 온도 20°C에서 1분당 다음에 정한 소화약 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

소화약제의 종별	소화약제의 양
하론2402	45kg
하론1211	45kg
하론1301	45kg

소화약제 : 하론2402, 하론1211, 하론1301

-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I에 해당하는 제조소등

제조소등의 구분	제조소등의 규모,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 대수량 등
제조소 일반취급소	 연면적 1,000m²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(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 48조의 위험물(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)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)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(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)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(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)
주유취급소	면적의 합이 500m²를 초과하는 것

-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I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

제조소등의 구분	제조소등의 규모,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 량 등
옥내저장소	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(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) 연면적 150m²를 초과하는 것 (150m²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℃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)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(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℃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은제외)
옥외탱크저장소	 액표면적이 40m²이상인 것(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)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(제 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 미 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)

-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I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

제조소등의 구분	제조소등의 규모,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 량 등
옥외탱크저장소	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(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)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
옥내탱크저장소	 액표면적이 40m²이상인 것(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)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(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)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℃이상 70℃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(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)

-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I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

제조소등의 구분	제조소등의 규모,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 량 등
옥외저장소	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(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)이 100m²이상인 것 인화성고체,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
암반탱크저장소	 액표면적이 40m²이상인 것(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)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
이송취급소	모든 대상

-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, 싫니L이트 그 ㅜ이 제품 , 트에 서비센어 된 드 , 싫더니

소화난이능급 I의	l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
등의 구분	소화설비
및 일반취급소	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(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외의 물분 무등소화설비에 한함)
급소	스프링클러설비(건축물에 한정), 소형수동식소화기등 (능력단위 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 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)
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 물에 설치한 옥내 저장소	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
그 밖의 것	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(포소화전을 옥외 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)
	등의 구분 및 일반취급소 급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 물에 설치한 옥내 저장소

-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I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

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옥외탱 지중 유황만을 저장 물분무소화설비	
크저장 탱크 ·취급하는 것	
소 인화점 70℃이 물분부소화설 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생의 제4류위 탱크 험물 만을 저 외의 장·취급하는 것 것	
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(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)	<u>=</u>
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,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 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·	
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, 물분무포소화설비, 이통식 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통식 이외의 로겐화합물소화설비	

-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I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

제조소등의	구분	소화설비
옥내탱크저 장소	유황만을 저장 · 취급하는 것	물분무소화설비
	인화점 70℃이상 의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·취급하 는 것	물분무소화설비, 고정식 포소화설비,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,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
	그 밖의 것	고정식 포소화설비,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,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
옥외저장소	및 이송취급소	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(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 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함)

-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I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

제조소등의	기 구분	소화설비
암반탱크 저장소	유황만을 저장 · 취 급하는 것	물분부소화설비
	인화점 70℃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것	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
	그 밖의 것	고정식 포소화설비(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)

- 소화난이도등급 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표에 해당하는 제조소등

제조소등의 구분	제조소등의 규모,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 량 등
제조소 일반취급소	 연면적 600m²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(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 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) Ⅱ・Ⅲ・IV・V・VⅢ・IX 또는 X 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(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)
옥내저장소	 단층건물 이외의 것 Ⅱ 또는 IV 제1호의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 (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) 연면적 150m² 초과인 것 Ⅲ의 옥내 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

- 소화난이도등급 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표에 해당하는 제조소등

제조소등의 구분	제조소등의 규모,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 량 등
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	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 외의 것(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℃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 는 것은 제외)
옥외저장소	 ●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면적 (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)이 5m² 이상 100m² 미만인 것 ● 피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●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(덩어리 상태의 유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)
주유취급소	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판매취급소	제2종 판매취급소

- 소화난이도등급 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

제조소등의 구분	소화설비
제조소 옥내저장 소·옥외저장소· 주유취급소·판 매취급소·일반 취급소	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,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, 당해 위험물의 소요 단위의 1/5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
옥외탱크저장소 · 욱내탱크저장소	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 개 이상 설 치할 것

- 소화난이도등급 皿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

제조소등의 구분	제조소등의 규모,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 량 등
제조소 일반취급소	 제48조의 위험물*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 또는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
옥내저장소	 제 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 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I 또는 소화난이도등급 Ⅲ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
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	모든대상

- 소화난이도등급 皿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

제조소등의 구분	제조소등의 규모,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 량 등
옥외저장소	 •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(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)이 5m² 미만인 것 • 덩어리 상태의 유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 또는 소화난이도등급 Ⅲ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
주유취급소	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제1종 판매취급 소	모든대상

- 소화난이도등급 皿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

제조소등의 구	소화설비	설치기준	
세포포공의 T 분		결 시기 正	
지하탱크저장소	소형수동식소화기등	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	2개 이상
이동탱크저장소	자동차용소화기	 무상의 강화액 8L이상 이산화탄소 3.2kg 이상 일브롬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(CF₂ClBr) 2L이상 일브롬화삼플루오르화메탄(CF₃Br) 2L이상 이브롬화사플루화메탄(C₂F₄BR₂) 1L이상 	2개 이상
	마른모래 및 팽창질 석 또는 팽창진주암	마른모래 150L이상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640L이상	

- 소화난이도등급 皿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
 - 소화난이등급 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

제조소등의 구 분	소화설비	설치기준
그 밖의 제조소등	소형수동식 소화기등	•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 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 르도록 설치할 것 • 다만, 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 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 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 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/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함

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소화설비의 적응성

Est to	of the state of th	The state of the s						대상들	물 구분					
		그건		제1 위함	제1류 위험물		제2류 위험물			3류 험물	제	TH	제	
	소화설비의 구분		그 밖의 공작물	전기설비	한한리대속라 산화물 110	그 밖의 것	철분·금속분· 마그네슘 등	인화성기체	그 밖의 것	디마수성 물품	그 밖의 것	4류 아이템	제5류 위험물	제 6 류 위험물
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			0			0		0	0		0		0	0
스프링클러설비			0			0		0	0		0	Δ	0	0
	물분무소화	설비	0	0		0		0	0		0	0	0	0
	포소화설비		0			0		0	0		0	0	0	0
무보므드	불활성가스소화설비			0				0				0		
물분무등 소화 설비물	할로겐화합	물소화설비		0				0				0		
설비물	분말 소화설비	인산염류 등	0	0		0		0	0			0		0
		탄산수소염류 등		0	0		0	0		0		0		
		그 밖의 것			0		0			0				
	봉상수(棒狀	(水)소화기	0			0		0	0		0		0	0
	무상수(霧狀	(水)소화기	0	0		0		0	0		0		0	0
	봉상강화액	소화기	0			0		0	0		0	7	0	0
	무상강화액	소화기	0	0		0		0	0		0	0	0	0
대형 · 소형 수동식 소화기	포소화기		0			0		0	0		0	0	0	0
수동식	이산화탄소	소화기		0				0				0		Δ
소화기	할로겐화합	물소화기		0				0				0		
	342.40-740	인산염류 소화기	0	0		0		0	0			0		0
	분말 소화기	탄산수소염류 소화기		0	0		0	0		0		0		
	7-4/	그 밖의 것			0		0			0				

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소화설비의 적응성

							대상물	물 구분					
		7.71		제1 위함			제2류 위험물			3류 텀물	제	제	제
	소화설비의 구분	그건축물 및 공작물	전 기 설 비	알칼리금속과 산화물 III)	그 밖의 것	철분· 금속분·	인화성고체	그 밖의 것	그 수성 물품	그 밖의 것	지4류 위험물	स्थावन मार	제 6 류 위험물
	물통 또는 수조	0			0		0	0		0		0	0
기타	건조사			0	0	0	0	0	0	0	0	0	0
	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			0	0	0	0	0	0	0	0	0	0

살수기준면적(m²)	방사밀도((L/m²분)	
	인화점 38℃ 미만	인화점 38℃ 이상	비고
279 미만	16.3 이상	12.2 이상	살수기준면적은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하나의 실의 바닥면적을 말하고, 하나의
279 이상 372 미만	15.5 이상	11.8 이상	실의 바닥면적이 465m² 이상인 경우의 살수기준면적은 465m²로 한다. 다만, 위험물의 취급을
372 이상 456 미만	13.9 이상	9.8 이상	주된 작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또는 부분이 넓게 분산되
465 이상	12.2 이상	8.1 이상	어 있는 경우에는 방사밀도는 8.2L/m²분 이상, 살수기준 면적은 279m²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소요단위 및 능력단위

- 소화설비의 소요단위
 - 정의
 - ❖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의 양의 기준단위
 - 소요단위의 계산방법
 - ❖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
 - ①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: 연면적 100m²를 1소요단위로 함
 - ②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: 연면적 50m²를 1소요단위로 함
 - ❖ 저장소의건축물
 - ①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: 연변적 150m²를 1소요단위로 함
 - ②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: 연면적 75m²를 1소요단위로 함
 - ❖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
 - ▶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
 - ❖ 위험물 :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함

소요단위 및 능력단위

- 소화설비의 능력단위
 - 정의 :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
 -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: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 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수치
 -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

소화설비	용량	능력단위
소화전용(轉用)물통	8L	0.3
수조(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)	80L	1.5
수조(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)	190L	2.5
마른 모래(삽 1 개 포함)	50L	0.5
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(삽 1개 포함)	160L	1.0

- 1. 소화설비의 구분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속하는 것은? (10-02)
 - ① 포소화설비

② 옥내소화전설비

③ 스프링클러설비

④ 옥외소화전설비

2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물분무등 소화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 (10-04)

① 포소화설비

② 분말소화설비

③ 스프링클러설비

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

- 3.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13-01)
 - ①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"소화전"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.
 - ②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③ 표시등 불빛은 부착면과 10도 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8m 이내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.
 - ④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.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4.	위험물제조소등에	설치하는	옥내소화전설비의	설명	중 틀린	것은? (14-02)
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---	----	------	-------------

- ① 개폐밸브 및 호스 접속구는 바닥으로부터 1.5m 이하에 설치
- ② 함의 표면에서 "소화전"이라고 표시할 것
- ③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벽으로부터 0.2m 이상 이격할 것
- ④ 비상전원의 용량은 45분 이상일 것

5.	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에서 큐비클식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는 당해 수	수전설
	비의 전면에 폭 얼마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하는가? (07-02)	

① 0.5M

2 1.0M

③ 1.5M

(4) 2.0M

6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 전지 설비로 옥내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 가? (15-01)

① 10분

② 20분

③ 45분

④ 60분

7.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은 무슨 색으로 하여야 하는가? (07-01)

① 청색

② 적색

③ 백색

(4) 녹색

8. 옥내소화전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층의 각 부분에서 하 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가? (08-04)

(1) 10

(2) **15**

(3) 20

(4) 25

9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에 대해 다음 ()에 알맞은 수치를 옳게 나열한 것은? (12-04)

옥내소화전설비는 각 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(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)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이 (①) 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(②)L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

1 1350, 2260 2 1450, 2260 3 1350, 2450 4 1450, 2450

10.위험물제조소에 옥내소화전을 각 층에 8개씩 설치하도록 할 때 수원의 최소 수량은 얼마인가? (15-02)

(1) 13m³

 $(2) 20.8 \text{m}^3$ $(3) 39 \text{m}^3$

(4) 62.4m³

11.	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가 6개일 때 수원	의 수량은 몇 m3 ⁰	기상이 되어야 하는	:가? (09-01)
	① 7.8	(2) 22.	(3) 39	(4) 46.8
	2층으로 된 위험물 제 다. 수원의 수량은 몇 n ① 13	n3 이상이 되어야	하는가? (08-04)	
13.	위험물제조소등에 옥니 었다. 이 때 수원의 수령	냥은 몇 m3 이상이	되도록 설치하여	야 하는가? (15-04)
	위험물 제조소에서 옥 수가 3개 이다. 수원의			
	1 2.6	2 7.8	3 15.6	4 23.4

15.	위험물제조소에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
	가 2개 이다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에 의하면 수
	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? (10-04)

 10.6m^3

(2) 15.6m³

 $(3) 20.6 \text{m}^3$

(4) 25.6m³

16. 위험물제조소에서 옥내소화전이 1층에 4개, 2층에 6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원의 수량은 몇 L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? (13-01)

13,000

2 15,6003 39,000

(4) 46,800

17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소화전설비의 옥외소화전이 3개 설치되었을 경우 수원의 수량은 몇 m³이상이 되어야 하는가? (14-04)

 \bigcirc 7

2 20.4

(3) 40.5

4 100

18. 단층건물로 된 위험물제조소에 8개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최 소방수량은 몇 m³/분 인가? (08-01)

(1) 0.65

(2) 1.04

3 1.3

(4) 2.08

19. 옥내소화전설비에서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경우 펌프의 전양정 H 는 소정의 산식에 의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. 전양정 H 는 소정의 산식에 의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. 전양정 H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? (단, h1은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, h2 는 배관의 마찰손실수두, h3 는 낙차이며, h1, h2, h3의 단위는 모두 m이다.) (12-02)

①
$$H = h1 + h2 + h3$$

①
$$H = h1 + h2 + h3$$
 ② $H = h1 + h2 + h3 + 0.35m$

(3)
$$H = h1 + h2 + h3 + 35m$$
 (4) $H = h1 + h2 + 0.35m$

$$(4)$$
 H = h1 + h2 + 0.35m

20. 옥외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 접속구는 지반면으로부터 몇 m 이하의 높이 에 설치해야 하는가? (11-04)

(1) 1.5

2 2.5

③ 3.5

4.5

2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? (14-04)

- 100kPa
 170kPa
 350kPa
 520kPa

22.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된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두 옥외서화전(설치개수가 4 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)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몇 KPa 이상이어야 하는가? (12-01)

(1) 170

(2) 350

⁽³⁾ 420

(4) 540

23.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설비에	있어서 옥외소화전함은 옥외
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몇 m 이하의 장소에	설치하는가? (15-04)

(1) 2m

(2) 3m

③ 5m

(4) 10m

24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소화전이 5개 설치된 제조소등에서 옥외소화전 의 수원의 수량은 얼마이상어야 하는가? (15-01)

(1) 14m³

 $(2) 35m^3$ $(3) 54m^3$

(4) 78m³

25. 위험물제조소등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에 있어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과 수평방향으로 각각 몇 m 의 공간 을 보유하여야 하는가? (12-01)

① 하방 0.3m, 수평방향 0.45m

③ 하방 0.45m, 수평방향 0.45m

② 하방 0.3m, 수평방향 0.3m

④ 하방 0.45m, 수평방향 0.3m

26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거하여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 클러설비에 설치하는 수동식 개방밸브를 개방 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은 몇 kg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? (14-01)

1 5

(2) **10**

3 15

(4) 20

27.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에서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변의 길이가 몇 m 초과할 때 당해 덕트 등의 아래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가? (11-04)

① 0.8

2 1.0

③ 1.2

4 1.5

28. 스프링클러헤드 부착장소의 평상시의 최고주위온도가 39℃ 이상 64℃ 미만 일 때 표시 온도의 범위로 옳은 것은? (10-02)

① 8℃ 이상 79℃ 미만

② 79℃ 이상 121℃ 미만

③ 121℃ 이상 162℃ 미만

④ 162℃ 이상

29.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서 결정된 표시온도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.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온도가 28℃ 이상 39℃ 미만 일 때, 표시 온도는? (14-04)

① 58℃ 미만

② 58℃ 이상 79℃ 미만

③ 79℃ 이상 121℃ 미만

④ 121℃ 이상 162℃ 미만

30.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방사구역마다 제어밸브를 설치하고자 한다.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? (10-02)

① 0.8m 이상 1.5m 이하

② 1.0m 이상 1.5m 이하

③ 0.5m 이상 0.8m 이하

④ 1.5m 이상 1.8m 이하

31.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? (15-02)

- ① 소화약제가 물이므로 소화약제의 비용이 절감된다.
- ② 초기 시공비가 적게 든다.
- ③ 화재 시 사람의 조작 없이 작동이 가능하다.
- ④ 초기화재의 진화에 효과적이다.

32.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08-02)

- ① 초기 진화작업에 효과가 크다.
- ② 규정에 의해 설치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선단의 방 사 압력이 100kPa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 거리가 1.7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습식스프링클러설비는 감지부가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동작이 정확하다.

33.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(15-04)

- ① 초기 화재의 진압에 효과적이다. ② 조작이 쉽다.
- ③ 소화약제가 물이므로 경제적이다. ④ 타 설비보다 시공이 비교적 간단하다.

34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물분무소화 [.] 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? (14-01)	설비의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어느 위
① 0.5m 이사 1.5m 이하	② 0.9m 이사 1.5m 이하

① 0.5m 이상, 1.5m 이야

③ 1m 이상, 1.5m 이하

(2) 0.8m 이상, 1.5m 이야

④ 1.5m 이상

35.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 소화설비에 있어서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(m²) 얼마 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? (13-04)

(1) 3

(2) 6

3 9

(4) 12

36.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 장치에서 압력수조의 압력 산출시 필요 없는 것은? (10-02)

① 낙차의 환산 수두압

③ 노즐선의 마찰손실 수두압

②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

④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

37.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포헤드방식의 포헤 드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m² 당의 방사량이 몇 L/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 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? (14-02)

1 3.5

(3) 6.5

38.	위험물인	전관리	법령상 포	소화설비	의 고정포	방출구를	를 설치한	위험물	탱크에
	부속하는	보조포소	소화전에	서 3개의	노즐을 동	시에 사용	용할 경우	각각의	노즐선
	단에서의	분당 방	사량은 5	몇 L/min (이상이어여	야 하는가	? (14-01)	

1 80

2 130

3 230

4 400

39.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·혼합하는 방식은? (14-04)

① 프레셔 프로포셔너

② 펌프 프로로셔너

③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

④ 라인 프로포셔너

40.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의 형태 중 고정지붕구조의 위험물탱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? (10-01)

특형

② Ⅱ형

③ **Ⅲ**형

④ IV형

41. 고정지붕구조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의 탱크 안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가 아닌 것은? (13-02)

① 특형 방출구

② I형 방출구

③ Ⅱ형 방출구

④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

- 42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포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른 기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15-02)
 - ① 자동식의 기동장치만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② 수동식의 기동장치만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③ 자동식의 기동장치와 수동식의 기동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④ 자동식의 기동장치 또는 수동식의 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43. 이동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? (09-01)

10

2 15

(3) 20

4 30

- 44.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저압식저장용기에 설치하는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 력은? (14-02)
 - ① 1.9MPa 이상의 압력 및 1.5MPa 이하의 압력
 - ② 2.3MPa 이상의 압력 및 1.9MPa 이하의 압력
 - ③ 3.75MPa 이상의 압력 및 2.3MPa 이하의 압력
 - ④ 4.5MPa 이상의 압력 및 3.75MPa 이하의 압력

45.	제4류	위험물	중	인화점	0 21°	C 미민	ŀ인	것을	저장	하는	탱크(에 고	<u>l</u> 정	식포크	と화
	설비를	설치하	고ㅈ	ㅏ한다.	포방출	구가	Ι	형인	경우	포수	용액	량은	몇	L/m ²	인
	가? (08	3-04)													

80

2 120

③ 160

4 240

46.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헤드의 방사 압력은 고압식의 경우 몇 MPa 이상이어야 하는가? (14-01)

1.05

2 1.7

③ 2.1

4 2.6

47.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특형 포방구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방출율은 약표면적 1m² 당 1분에 몇 리터 이상이어야 하는가? (11-02)

① 9.5L

2 8.0L

3 6.5L

④ 3.7L

48.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출방식 중 전역방출방식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14-04)

- ① 발화위험 및 연소위험이 적고 광대한 실내에서 특정장치나 기계만을 방호하는 방식
- ② 일정 방호구역 전체에 방출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구획을 밀폐하여 불연성가스를 방출하는 방식
- ③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 설치하는 방식
- ④ 사람이 용이하게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는 호스를 연장하여 소화활동을 행하는 방식

49.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? (12-01)

- ① 원칙적으로 겸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
- ② 동관의 배관은 고압식인 경우 16.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것
- ③ 관이음쇠는 저압식의 경우 5.0MPa 이상의 압력에 견디는 것일 것
- ④ 배관의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수직거리는 30m 이하

- 50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13-02)
 - ① 방호구역 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②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 한다.
 - ③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④ 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51.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에 있어 분사헤드는 저장용기에 저장된 분말소화 약제량을 몇 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하여야 하는가? (11-02)

1 15

2 30

(3) 45

4 60

52.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준에서 저압식 저장용기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부품이 아닌 것은? (09-02)

액면계

② 압력계

③ 용기밸브

④ 파괴판

- 53.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? (14-01)
 - ①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에 있어서는 1.5 이상 1.9 이하, 저압식에 있어서는 1.1 이상 1.4 이하로 한다.
 - ②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2.3MPa 이상 및 1.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 장치를 설치한다.
 - ③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를 -20℃ 이상, -18℃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한다.
 - ④ 기동용 가스용기는 20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- 54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로 사용이 가능한 가스로만 이루어진 것은? (15-04)
 - ① 산소, 질소

② 이산화탄소, 산소

③ 산소, 아르곤

④ 질소, 이산화탄소

55. 다음 중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용 가스로 정한 것에 해당하는 가스는? (09-04)

① 공기

② 질소

③ 산소

④ 염소

	험물안전관리법령싱 강하도록 지정한 것은		기준에서 가압용	또는 축압용 가스로
1	헬륨	② 질소	③ 일산화탄소	④ 아르곤

57.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에서 Halon 1211 을 방사 하는 경우의 방사압력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? (12-02)

① 0.1Mpa

② 0.2Mpa ③ 0.5Mpa ④ 0.9Mpa

58.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 분사헤드의 방사 압력은 몇 Mpa 이상인가? (08-04)

(1) 0.1

(2) 0.2

(3) 0.3

(4) 0.4

59. 할로겐화물소화설비 기준에서 하론 2402 를 가압식 저장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충전비로 옳은 것은? (14-04)

① 0.51 이상 0.67 이하

③ 0.9 이상 1.6 이하

② 0.7 이상 1.4 미만

④ 0.67 이상 2.75 이하

60.	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	소화약제	중	축압식	저장용기에	저장하는	하론	2402
	의 충전비는? (11-01)							

① 0.51 이상 0.67 이하

③ 0.7 이상 1.4 이하

② 0.67 이상 2.75 이하

④ 0.9 이상 1.6 이하

61.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이다. () 에 알맞은 수치는? (14-02)

축압식 저장용기등은 온도 21℃에서 하론1301을 저장하는 것은 ()MPa 또는 ()MPa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가압할 것

① 0.1, 1.0

② 1.1, 2.5 ③ 2.5, 1.0

(4) 2.5, 4.2

62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이동식할로겐화물 소화설비 기준에 의하면 20℃에서 하나의 노즐이 하론 2402를 방사 할 경우 1분당 몇 kg의 소화약제 를 방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? (15-02)

(1) 35

(2) 40

(3) 45

(4) 50

- 63. 다음 [조건]하에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저장 하여야 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몇 kg 이상이어야 하는가? (09-01)
 - 저장하는 위험물 : 휘발유
 -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함
 -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: 40m²
 - 소화약제의 종류 : 하론1301
 - 1 222

2 340

⁽³⁾ 467

- 4 570
- 64.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거리는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? (단,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.) (09-04)
 - 10

2 20

3 25

4 30

- 65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중 소화난이도 등급 I에 해당하는 것은? (단,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가 아닌 경우이다.) (15-01)
 - ① 액표면적이 10m² 인 것
 - ② 액표면적이 20m² 인 것
 - ③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4m 인 것
 - ④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인 것
- 66. 소화난이도등급 파의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대형수동식 소화기를 몇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? (08-02)
 - ① 1개 이상
- ② 2개 이상 ③ 3개 이상
- ④ 4개 이상
- 67.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의 소화설비로 고 려될 수 없는 것은? (14-04)
 -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
 - ③ 고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

- ② 옥내소화전설비
- ④ 고정식 분말소화설비

- 68. 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와 그 설치기 준을 옳게 나타낸 것은? (08-01)
 - ① 대형소화기 2개 이상 설치
 - ② 소형수동식소화기 능력단위의 수치 2이상으로 1개 이상 설치
 - ③ 마른모래 150L 이상 설치
 - ④ 소형수동식소화기 능력단위의 수치 3 이상으로 2개 이상 설치
- 69.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과 산화물이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? (12-01)
 - ① 인산염류분말
 - ③ 탄산수소염류분말

- ② 이산화탄소
- ④ 할로겐화합물
- 70. 제2류 위험물 중 철분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? (11-01)
 - ① 인사염류 분말소화설비
 - ③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
- ② 이산화탄소 소화설비
 - ④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
- 71. 위험물의 화재 발생 시 사용 가능한 소화약제를 틀리게 연결한 것은? (12-02)
 - ① 질산암모늄 H₂O
 - ③ 트리에틸알루미늄 팽창질석
- ② 마그네슘 CO₂
 - ④ 니트로글리세린 H₂O

72.	제3류 위험물에서	금수성물질의	화재에	적응성이	있는	소화약제는?	(09-0))1)
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	-----	------	----	--------	--------	-----

- ① 할로겐화합물 ② 이산화탄소 ③ 탄산수소염류 ④ 인산염류

73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는? (12-04)

- ① 할로겐화합물소화기
- ③ 이산화탄소소화기

- ② 인산염류분말소화기
 - ④ 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기

74. 다음 중 (C₂H₅)₃AI 의 소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소화약제는? (07-01)

- ② CO₂ ③ 팽창진주암 ④ CCl₄

75. 트리에틸알루미늄의 소화약제로서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것은? (15-02)

- ① 마른모래, 팽창질석
- ③ 할로겐화물, 단백포

- ② 물, 수성막포
- ④ 이산화탄소, 강화액

76. C₆H₆ 화재의 소화약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? (15-01)

- ① 인산염류분말 ② 이산화탄소 ③ 할로겐화합물 ④ 물(봉상수)

- 77. 위험물의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소화설비(약제)를 연결한 것이다. 소화효과가 가장 떨어진 것은? (12-01)
 - ① (C₂H₅)₃Al 팽창질석
 - ③ C₆H₂(NO₂)₃OH 수조

- $(2) C_2H_5OC_2H_5 CO_2$
- ④ C₆H₄(CH₃)₂ 수조
- 78. 다음 각각의 위험물의 화재 발생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적응 가능한 소화 설비를 옳게 나타낸 것은? (14-02)
 - ① C₆H₅NO₂: 이산화탄소소화기
 - ③ C₂H₅OC₂H₅ : 봉상수소화기

- ② (C₂H₅)₃Al : 봉상수소화기
- ④ C₃H₅(ONO₂)₃: 이산화탄소소화기
- 79. 다음 중 제5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? (08-04)
 - ① 분말을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② CO₂를 방사하는 소형소화기
 - ③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④ 스프링클러설비

80. 위험물에 따른 소화설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12-02)

-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과산화물은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다.
- ② 제2류 위험물 중 금속분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응성이 없다.
- ③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다.
- ④ 제5류 위험물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응성이 있다.

8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의 유별로만 나열된 것은? (12-04)

- ① 제1류 위험물, 제4류 위험물
- ③ 제4류 위험물, 제5류 위험물

- ② 제2류 위험물, 제4류 위험물
 - ④ 제5류 위험물, 제6류 위험물

82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서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적응성 이 있는 것은? (11-04)

-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위험물

83. 제4류 위험물에 대해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는? (11-04)

- ① 옥내소화전설비
- ③ 봉상강화액소화기

- ② 옥외소화전설비
- ④ 무상강화액소화기

- 84. 물통 또는 수조를 이용한 소화가 공통적으로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은 제 몇 류 위험물인가? (10-01)
 - ① 제2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위험물

- 85. 물분무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은? (12-04)
 - ① 알칼리금속과산화물

② 금속분・마그네슘

③ 금수성물질

- ④ 인화성고체
- 86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가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? (15-04)
 - ① 제4류 및 제 5류 위험물 할로겐화합물 소화기
 - ② 제4류 및 제6류 위험물 인산염류
 - ③ 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기
 - ④ 제2류 및 제3류 위험물 팽창질석
- 87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적응 성이 없는 소화설비는? (13-04)
 - ① 팽창질석
 - ③ 포소화기

- ② 할로겐화합물소화기
- ④ 인산염류분말소화기

88.	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	제6류	위험물에	적응성이	있는	소화설비는?	(15-02)
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	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

- ① 옥내소화전설비
- ③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

-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
- ④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

89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물분무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대상물은? (15-02)

① 알칼리금속과산화물

② 전기설비

③ 마그네슘

④ 금속분

90. 다음 중 물분무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대상물은? (09-04)

- ① 전기설비 ② 제4류 위험물 ③ 인화성고체 ④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

91. 다음 중 해당 유(類)별에 속하는 모든 위험물에 대하여 물분무소화설비의 적 응성이 있는 것은? (08-01)

-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

92. 전기설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적응성을 가지 는 소화설비는? (13-04)

- ① 이산화탄소소화기 ② 포소화기 ③ 봉상강화액소화기 ④ 마른 모래

93.	다음	중	C급	화재에	가장	적응성이	있는	소화설비는?	(14-04)
-----	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

- ① 봉상강화액 소화기
- ③ 이산화탄소소화기

- ② 포소화기
- ④ 스프링클러설비

94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가솔린의 화재 시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는? (15-02)

- ① 봉상강화액소화기
- ③ 이산화탄소소화기

- ② 무상강화액소화기
 - ④ 포소화기

95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? (09-04)

- 포소화설비
- ③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

-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
- ④ 물분무소화설비

96. 과산화나트륨의 화재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? (10-04)

- ① 포소화기
- ② 건조사 ③ 이산화탄소소화기
- ④ 물통

97. 다음 중 C급 화재에 가장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? (12-02)

- ① 봉상강화액 소화기
- ③ 이산화탄소소화기

- ② 포소화기
- ④ 스프링클러설비

- 98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디에틸에테르 화재발생시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는? (13-02)
 - ① 이산화탄소소화기

③ 봉상강화액소화기

- ② 포소화기
- ④ 할로겐화합물소화기
- 99. 다음 중 니트로셀룰로오스 위험물의 화재시에 가장 적절한 소화약제는? (13-01)

① 사염화탄소

② 이산화탄소 ③ 물

④ 인산염류

- 100. 인화성고체와 질산에 공통적으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? (12-02)
 -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

③ 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설비

②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

④ 포소화설비

101. 다음의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. 가장 부적합한 경우는? (10-02)

事루엔

② 동식물유류 ③ 고형 알코올 ④ 과산화나트륨

- 102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질산나트륨에 대한 소화설비의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? (15-01)
 - ① 건조사만 적응성이 있다.
 - ③ 포소화기는 적응성이 없다.

- ② 이산화탄소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.
- ④ 할로겐화합물소화기는 적응성이 없다.
- 103. 마그네슘 분말의 화재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소화적응성이 없다.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? (11-01)
 - ① 분해반응에 의하여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.
 - ② 가연성의 일산화탄소 또는 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이다.
 - ③ 분해반응에 의하여 수소가 발생하고 이 수소는 공기중의 산소와 폭명반응을 하기 때문이다.
 - ④ 가연성의 아세틸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.
- 104. 알코올 화재시 수성막포 소화약제는 효과가 없다. 그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? (11-01)
 - ① 알코올이 수용성이어서 포를 소멸시키므로
 - ② 알코올이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므로
 - ③ 알코올 화재시 불꽃의 온도가 매우 높으므로
 - ④ 알코올이 포소화약제와 발열반응을 하므로

105.	위험물에	따라	적응성이	있는	소화설비를	연결한	것은?	(09-01)
------	------	----	------	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----

- ① C₆H₅NO₂ 이산화탄소소화기
- ③ C₂H₅OC₂H₅ 물통(수조)

- ② Ca₃P₂ 물통(수조)
- ④ C₃H₅(ONO₂)₃ 이산화탄소소화기

106. 인화점이 38℃미만인 제 4류 위험물 취급을 주된 작업내용으로 하는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1분당 방사밀도는 몇 L/m³ 이상 이어야 하는가? (단, 살수기준면적은 250m² 이다)(07-02)

12.2

- 2 13.9
- (3) **15.5**

4 16.3

107. 아닐린 취급을 주된 작업내용으로 하는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1분당 방사밀도는 몇 L/m² 이상이어야 하는가? (단, 살수기준면적은 250m² 이다.) (09-01)

1 12.2

- 2 13.9
- **3** 15.5

4 16.3

108. 위험물의 취급을 주된 작업내용으로 하는 다음의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1분장 방사밀도는 몇 L/m² 이상이어야 하는가? (단,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에 의하여 2개의 실로 구획되고, 각 실의 바닥면 적은 500 m² 이다.) (09-01)

- 취급하는 위험물: 제4류 제3석유류
-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바닥면적 : 1,000m²

8.1

2 12.2

(3) 13.9

4 16.4

109. 소요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09-01)

- ①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이다.
- ② 소화설비 소화능력의 기준단위이다.
- ③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75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.
- ④ 지정수량 10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.

110. 제조소 건축물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의 1소요단위는 연면적이 몇 m² 인 가? (14-02)

50

(2) 100

(3) 150

(4) 1000

	[골 군시]			
111	. 위험물 취급소의 건축 ① 4단위			
112	. 위험물취급소의 건축 내화구조이다.) (13-0'		n² 인 경우 소요단 [.]	위는? (단, 외벽은
	① 4단위	② 5단위	③ 6단위	④ 7단위
113	.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조로 된 것은 연면적 ! ① 50	몇 m² 를 1 소요단		04)
114	. 외벽이 내화구조인 우	험물저장소 건축	물의 연면적이 150	00m² 인 경우 소요
	단위는? (13-04) ① 6	② 10	③ 13	4 14
115	. 소화설비 설치 시 동 ⁴ (15-02)	식물유류 400000L	에 대한 소요단위	는 몇 단위인가?
	 2 	② 4	③ 20	(4) 40

116.	클로로벤젠	300000L 의	소요단위는	얼마인가?	(15-01)

(1) 20

(2) **30**

③ 200

(4) 300

117. 피리딘 20000 리터에 대한 소화설비의 소요단위는? (13-01)

① 5 단위 ② 10 단위 ③ 15 단위 ④ 100 단위

118. 피리딘 40000 리터에 대한 소화설비의 소요단위는? (09-04)

① 5 단위 ② 10 단위 ③ 15 단위 ④ 100 단위

119. 탄화칼슘 60000kg 를 소요단위로 산정하면? (13-02)

① 10단위 ② 20단위 ③ 30단위 ④ 40단위

120. 메탄올 40000L 는 소요단위가 얼마인가? (11-01)

① 5단위 ② 10단위 ③ 15단위 ④ 20단위

121. 경유 50000L 의 소화설비 소요단위는? (11-02)

 \bigcirc 3

(2) **4**

(3) 5

(4) 6

122. 휘발유 10000L 에 해 ① 2단위		= 얼마인가? (08-0 ③ 4단위	
123. 가솔린 저장량이 200 ① 1		설치를 위한 소요 ③ 3	단위는? (13-01) ④ 4
124. 알코올류 40000 리터 ① 5 단위			
125. 디에틸에테르 2000L 소요단위는 얼마인가?	(12-02)	를 옥내저장소에 3 50	저장하고 있다면 총 ④ 60
126. 다음 소화설비 중 능 ⁱ	력단위가 1.0 인 것	<u> (</u> 은? (07-02)	

- ① 삽 1개를 포함한 마른모래 50L
- ② 삽 1개를 포함한 마른모래 150L
- ③ 삽 1개를 포함한 팽창질석 100L
- ④ 삽 1개를 포함한 팽창질석 160L

127.	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	마른모래(삽	1개 포	도함) 50L :	의 능력	력단위는?	(15-02)
------	------------	--------	------	-----------	------	-------	---------

① 0.3

2 0.5

③ 1.0

4 1.5

128. 다음 중 소화설비와 능력단위 연결이 옳은 것은? (09-04)

- ① 마른모래(삽 1개 포함) 50L 0.5 능력단위
- ② 팽창질석(삽 1개 포함) 80L 1.0 능력단위
- ③ 소화전용물통 3L 0.3 능력단위
- ④ 수조(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) 190L 1.5 능력단위

129. 팽창질석(삽 1개 포함)은 용량이 몇 L일 때 능력단위가 1.0 이 되는가? (08-02)

1 160

2 130

③ 90

4 60

130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다음의 소화설비 중 능력단위가 가장 큰 것은? (13-04)

① 팽창진주암 160L(삽 1개 포함)

③ 마른 모래 50L(삽 1개 포함)

② 수조 80L(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)

④ 팽창질석 160L(삽 1개 포함)

131.	다음	소화설비	중	능력	단위가	0.5인	것은?	(09-02)
------	----	------	---	----	-----	------	-----	---------

- ① 삽 1개를 포함한 마른모래 50L
- ③ 삽 1개를 포함한 팽창질석 100L

- ② 삽 1개를 포함한 마른모래 150L
- ④ 삽 1개를 포함한 팽창질석 160L

132.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기타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13-02)

① 마른모래

② 수조

③ 소화기

④ 팽창질석

133. 제조소등에 전기설비(전기배선,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)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면적이 150m²인 경우 설치해야 하는 소형수동식소화기의 최소 갯수는? (11-02)

① 1개

② 2개

③ 3개

4 4개

Thank you